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2019.02.12.

서울특별시 양천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서울특별시 양천구 노인 성인용 보행기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1. 회부경위

본 제정조례안은 2020.01.31. 임준희·이재식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2020.01.31. 당 위원회로 회부됨에 따라 이를 검토하여 보고 드림(의안번호 제2440호).

2. 제안이유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힘든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한 보행보조기를 제공함으로써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유지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안 제1조 및 제2조).

나. 지원대상자 및 지원기준(안 제3조 및 제4조).

다. 지원신청 및 선정에 관한 규정(안 제5조).

라. 지원제외 및 회수에 관한 규정(안 제6조 및 제7조).

4. 참고사항

가. 관련법령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 제23조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 제9조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나. 예산조치 : 필요시 반영.

다. 관련부서 검토의견 : 없음.

5. 검토의견(전문위원 신훈)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보행이 어려운 어르신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동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성인용 보행기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본 조례 제정의 타당성을 살펴보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함) 시행에 따라,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가 제공되고 있음.
- 장기요양급여 신청대상은 장기요양이 필요한 65세 이상 노인 및 치매등 노인성질병을 가진 65세 미만자로서, 법 제12조에 따라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이어야 함.
- 법 제23조에 따르면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으며, 그 중 재가급여에는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기능 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써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구입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복지용구 급여가 있음.
-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에 따르면, 복지용구 급여는 【표 1】과 같은 구입품목, 대여품목 등이 있으며, 연간 1인당 160만원 한도에서 이용 가능함.
- 이처럼, 현재 성인용 보행기는 장기요양급여 서비스 지원대상만 이용 가능함. 결국, 보행이 어려워 성인용 보행기가 필요하나 경제력이 부족하여 보행기를 구입할 수 없는 노인의 경우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상황임. 따라서, 본 조례 제정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노인들에게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하는 것은 활동성 증진을 통한 건강 증진효과와 정상적인 외출을 통한 사회적 관계 확대 등의 긍정적 효과가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본 조례안의 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표 1】복지용구 급여 품목

구입품목(10종)	- 이동변기 -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 목욕의자 - 지팡이 - **성인용보행기** - 욕창예방 방석 - 안전손잡이 - 자세변환용구 - 미끄럼 방지용품 - 요실금팬티 (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대여품목(7종)	- 수동휠체어 - 목욕리프트 - 전동침대 - 배회감지기 - 수동침대 - 경사로 - 이동욕조
구입 또는 대여품목(1종)	- 욕창예방 매트리스

○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3조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는 것으로,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 수급자로 판정 받지 못한 등급외의 사람으로,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2019년 12월 기준 양천구에 65세 이상 노인의 수는 61,147명이며, 그 중 본 조례에 따른 대상자 수는 3,045명 정도로 추산되며, 2020년에도 큰 차이는 없으리라 생각됨.

【표 2】장기요양등급외자(A,B) 판정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경감대상자 수

구분	기초생활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경감대상자	총계
2019년 1월	204	9	31	244
2019년 2월	200	9	31	240
2019년 3월	206	10	30	246
2019년 4월	208	12	31	251
2019년 5월	204	11	32	247
2019년 6월	215	12	33	260
2019년 7월	217	13	33	263
2019년 8월	215	13	32	260
2019년 9월	215	13	32	260
2019년 10월	209	13	29	251
2019년 11월	217	12	34	263
2019년 12월	214	12	34	260
총계	**2,524**	**139**	**382**	**3,045**

- 안 제4조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지원기준을 수립한 것으로, 지원대상자 1명에게 1대를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5년이 경과하여 수리가 곤란하거나 재해·재난으로 성인용 보행기를 멸실했을 경우 최대 1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함.
- 다른 자치구의 현황을 살펴보면, 동대문구와 강서구가 본 조례와 마찬가지로 5년 주기 최대 2대의 성인용 보행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성인용 보행기 단가는 20만원 또는 25만원으로 산출하고 있음. 양천구의 경우에 본 조례가 통과되면, 추가경정예산 또는 2021년 예산편성 등을 통해 관련 비용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다만, 강서구의 경우 2019년에 성인용보행기 신청수요가 저조하여

2020년에는 예산을 미편성한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정확한 수요 예측을 통해 관련 예산을 편성해야 불용액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사료됨.

【표 3】서울시 자치구 성인용 보행기 조례 제정 및 예산편성 현황

구 별	지원기준	예산편성('20년)	조례제정	비 고
은평구	전액지원 (5년 주기 1대)	1,400만원 (20만원×70명)	2017년	
서대문구	차등지원 (1대)	800만원 (20만원×40명)	2017년	
강동구	전액지원 (1대)	750만원 (25만원×30명)	2018년	
동대문구	전액지원 (5년 주기 최대2대)	2,000만원 (25만원×80명)	2019년	
강서구	전액지원 (5년 주기 최대2대)	미 편성	2018년	

※ 참고 : 40개 자치단체(서울시 5개구 포함)에서 보행기 관련 조례 제정 시행중

- 안 제5조부터 제7조는 지원신청 및 선정, 지원제외 및 지원회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본 조례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제정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와의 형평성 확보 방안 및 선정 기준 명확화에 따른 보완 대책과 성인용 보행기 재판매 방지 방안 등의 관리대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본 조례안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상위법에 저촉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본 조례안은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의 삶의 질을 증진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15조(등급판정 등) ①공단은 제14조에 따른 조사가 완료된 때 조사결과서, 신청서, 의사소견서, 그 밖에 심의에 필요한 자료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인이 제12조의 신청자격요건을 충족하고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 심신상태 및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급판정기준에 따라 수급자로 판정한다.

③등급판정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심의·판정을 하는 때 신청인과 그 가족, 의사소견서를 발급한 의사 등 관계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 공단은 장기요양급여를 받고 있거나 받을 수 있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는 제14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등급판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2. 고의로 사고를 발생하도록 하거나 본인의 위법행위에 기인하여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경우

⑤ 등급판정위원회는 제4항에 따라 제출된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2항에 따라 다시 등급판정을 할 수 있다.

제23조(장기요양급여의 종류) ①이 법에 따른 장기요양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

가. 방문요양 :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는 장기요양급여

나. 방문목욕 : 장기요양요원이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다. 방문간호 : 장기요양요원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서(이하 "방문간호지시서"라 한다)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라. 주·야간보호 : 수급자를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마. 단기보호 : 수급자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에서 일정 기간 동안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바. 기타재가급여 : 수급자의 일상생활·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향상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하거나 가정을 방문하여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2.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을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

3. 특별현금급여

가. 가족요양비 : 제24조에 따라 지급하는 가족장기요양급여

나. 특례요양비 : 제25조에 따라 지급하는 특례장기요양급여

다. 요양병원간병비 : 제26조에 따라 지급하는 요양병원장기요양급여

②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과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업무·보수교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장기요양급여의 제공 기준·절차·방법·범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60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4. 장기요양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1점 이상 60점 미만인 자

5. 장기요양 5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 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이상 51점 미만인 자

6. 장기요양 인지지원등급 : 치매(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에 해당하는 치매로 한정한다)환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

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제9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ㆍ신체활동 지원 및 인지기능의 유지ㆍ향상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복지용구 급여범위 및 급여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2조(급여방식 및 급여품목) ① 복지용구 급여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제9조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를 제공하는 기관(이하 "복지용구사업소"라 한다)에 의하여 제공된다.

②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자(이하 "수급자"라 한다)에 대한 복지용구의 급여방식은 구입방식과 대여방식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방식 : 수급자가 『구입품목』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부담하고 구입
2. 대여방식 : 수급자가 『대여품목』을 일정기간 대여하고 당해 제품의 대여가격에서 본인부담금을 부담

③ 제1항에 따른 급여품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구입품목

가. 이동변기

나. 목욕의자

다. 성인용 보행기

라. 안전손잡이

마. 미끄럼방지용품(미끄럼방지매트, 미끄럼방지액, 미끄럼방지양말)

바. 간이변기(간이대변기·소변기)

사. 지팡이

아. 욕창예방방석

자. 자세변환용구

차. 요실금팬티

2. 대여품목

가. 수동휠체어

나. 전동침대

다. 수동침대

라. 이동욕조

마. 목욕리프트

바. 배회감지기

사. 경사로

3. 구입 또는 대여품목

가. 욕창예방매트리스

④ 제3항에 따른 급여품목 외에 새로운 복지용구 품목의 급여를 원하는 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이사장에게 해당 복지용구의 급여품목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제4항에 따른 급여품목 선정 신청 및 선정의 절차, 선정기준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하여 공고한다.